

승강장안전문 설비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 안 요 지

1. 개정이유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에 따른 승강장안전문설비 용어 변경으로 승강장안전문설비 적정 운영 도모

2. 주요골자

□ 용어변경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22)

- | | |
|---|---------------------|
| • 승강장안전문 → 승강장안전문설비 (변경) | • 가동문 → 승강장안전문 (변경) |
| • 승강장안전문설비 중 승강장안전문을 제외한 유리 벽체 → 안전보호벽 (신설) | |

□ 안전보호벽용어 신설에 따른 구분적용 (안전지원센터 승강문안전단 자체 검토)
(운용 관리상 장치별 정비기준 구분 및 정기점검시 점검항목 구분 적용 필요)

- | | |
|-------------------------------|-----------------------------|
| • 비상문 → 안전보호벽(비상문) (변경) | • 선로출입문 → 안전보호벽(선로출입문) (변경) |
| • 기관사출입문 → 안전보호벽(기관사출입문) (변경) | |

□ 용어변경 ('15년 5월 직제규정개정관련, 본부장방침 제395호 '15.5.15)
- 업무효율화를 위한 업무조정(기술연구소 전자개발파트 정비업무를 기술지원단 업무이관)

- | |
|---|
| • 기술연구소장(전자개발 P/L) → 기술지원단장(통신전자 부장) (변경) |
|---|

3. 참고사항

-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10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의 예산조치 필요 없음
- 다. 절 차 : 사규심의 → 사장결재 → 개정시행

승강장안전문 설비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승강장안전문 설비운용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승강장안전문 V 설비운용관리규정”을 “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중 “승강장안전문 V 설비”를 “승강장안전문설비”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승강장안전문(PSD : Platform Screen Door)”를 “승강장안전문설비(PSD : Platform Screen Door)”로, “고정문 및 가동문”을 “안전보호벽 및 승강장안전문”으로 하며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안전보호벽”이란 승강장안전문설비 중에서 승강장안전문을 제외한 유리벽체를 말하며, 비상문·선로출입문·기관사출입문 등을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중 “승강장안전문”을 각각 “승강장안전문설비”로 한다.

같은 조 제13호, 제14호, 제19호 중 “가동문”을 각각 “승강장안전문”으로 하고, 제20호의 중 “비상문”을 “안전보호벽(비상문)”(이하 “비상문”이라 한다)로, 제21호 중 “선로출입문”을 “안전보호벽(선로출입문)”(이하 “선로출입문”이라 한다)로 하며, 제22호 중 “기관사출입문”을 “안전보호벽(기관사출입문)”(이하 “기관사출입문”으로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24호, 제25호, 제28호, 제29호, 제31호, 제32호, 제34호 중 “승강장안전문”을 각각 “승강장안전문설비”로, 제35호 중 “가동문”을 “승강장안전문”으로 하며, 제37호, 제38호 중 “승강장안전문”을 각각 “승강장안전문설비”로 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제5조 중 “승강장안전문”을 “승강장안전문설비”로,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기술연구소장(전자개발 P/L)”을 각각 “기술지원단장(통신전자 부장)”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승강장안전문”을 “승강장안전문설비”로 한다.

제7조, 제8조, 제10조제1호 중 “승강장안전문”을 각각 “승강장안전문설비”로 하고, 제10조제2호 중 “승강장안전문 가동문”을 “승강장안전문”으로 한다.

제7조, 제10조의제1호 중 “가동문”을 각각 “승강장안전문”으로 한다.

제11조 중 “승강장안전문”을 “승강장안전문설비”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승강장안전문”을 “승강장안전문설비”로 한다.

제13조, 제17조, 제19조 중 “승강장안전문”을 각각 “승강장안전문설비”로 한다.

제20조 중 “소장”을 “①소장”으로 하고, 제3항 중 “승강장안전문시설물”을 “승강장안전문설비 시설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승강장안전문”을 “승강장안전문설비”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승강장안전문”을 “승강장안전문설비”로, “승강장안전문 해당 설비”를 “해당 승강장안전문설비”로 하고, “가동문”을 “승강장안전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비고
<p>승강장안전문 설비이용관리규정</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승강장안전문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승강장안전문 설비의 정상 기능 확보와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승강장안전문 설비와 이에 관련된 부대설비의 유지보수와 운용관리에 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승강장안전문(PSD : Platform Screen Door)”이라 함은 승강장 연단에 고정문 및 가동문을 설치하여 승강장과 선로측을 차단함으로써 역사내의 승객 안전을 확보하는 설비를 말한다.</p> <p>2. “유지보수 업무”라 함은 승강장안전문이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p> <p>3. “승강장안전문 보수자”라 함은 승강장안전문의 점검보수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p> <p>4. “승강장안전문 운용자”라 함은 승강장안전문을 직접 운용하는 기관사와 역직원을 말한다.</p> <p>5. “점검”이라 함은 승강장안전문의 기능·동작상태 등 승강장안전문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p> <p>6. “보수”라 함은 승강장안전문 시스템이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상실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조정·수리·교체 등에 의해 승강장안전문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말한다.</p> <p>6의2. “개량”이란 설비의 노후 및 고장 등으로 계속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 개선, 부품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4.12.26)</p> <p>6의3. “교체”란 설비의 노후, 고장 등으로 보수가 불가하거나 계속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다른 설비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4.12.26)</p>	<p>승강장안전문설비이용관리규정</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승강장안전문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승강장안전문설비의 정상 기능 확보와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승강장안전문설비와 이에 관련된 부대설비의 유지보수와 운용관리에 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승강장안전문설비(PSD : Platform Screen Door)”라 함은 승강장 연단에 안전보호벽 및 승강장안전문을 설치하여 승강장과 선로측을 차단함으로써 역사내의 승객 안전을 확보하는 설비를 말한다.</p> <p>1의2. “안전보호벽”이란 승강장안전문설비 중에서 승강장안전문을 제외한 유리벽체를 말하며, 비상문·선로출입문·기관사출입문 등을 포함한다.(신설)</p> <p>2. “유지보수 업무”라 함은 승강장안전문설비가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p> <p>3. “승강장안전문설비 보수자”라 함은 승강장안전문설비의 점검보수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p> <p>4. “승강장안전문설비 운용자”라 함은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직접 운용하는 기관사와 역직원을 말한다.</p> <p>5. “점검”이라 함은 승강장안전문설비의 기능·동작상태 등 승강장안전문설비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p> <p>6. “보수”라 함은 승강장안전문설비 시스템이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상실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조정·수리·교체 등에 의해 승강장안전문설비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말한다.</p> <p>6의2. (현행과 같음)</p> <p>6의3. (현행과 같음)</p>	<p>※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22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 변경</p>

현행	개정	비고
6의4. “기대수명”이란 시스템의 설치 당시에 기대했던 기능과 성능을 유지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4.12.26)	6의4. (현행과 같음)	<p>※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22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 변경</p> <p>※「장치별 정비기준 및 정기점검시 점검항목」구분 적용</p>
7. “바이패스(By-Pass)”라 함은 설비의 고장발생·문열림 또는 그 밖의 상황 등 설비의 고장 상태를 무시토록 하는 기능을 말한다.	7. (현행과 같음)	
8. “바이패스 설정”이라 함은 <u>승강장안전전문이</u> 고장으로 열린 상태에서 열차 진입 및 출발이 가능하도록 종합제어반·승강장조작반·기관사조작반에서 “바이패스 설정”으로 정자를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8. “바이패스 설정”이라 함은 <u>승강장안전전문설비가</u> 고장으로 열린 상태에서 열차 진입 및 출발이 가능하도록 종합제어반·승강장조작반·기관사조작반에서 “바이패스 설정”으로 정자를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9. “바이패스 해제”라 함은 “바이패스 설정”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9. (현행과 같음)	
10. “시험장비(Test Bench)”라 함은 중고장 수리 등이 필요한 모듈·에비부속장치 등을 점검·시험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10. (현행과 같음)	
11. “종합제어반”이라 함은 고객상담실에 설치하여 설비제어 및 동작상태를 표시하며, 역사내 각 조작반·각종 제어장치 및 신호설비·승강장 안전문 관제설비 등과의 인터페이스를 처리하는 설비를 말한다.	11. (현행과 같음)	
12. “승강장조작반”이라 함은 승강장 중앙부에 설치하여, 승강장안전문의 개·폐 조작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12. (현행과 같음)	
13. “기관사조작반”이라 함은 승강장에 설치하여 기관사가 승강장안전문의 개·폐를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또한 <u>가동문의</u>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13. “기관사조작반”이라 함은 승강장에 설치하여 기관사가 승강장안전문의 개·폐를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또한 <u>승강장안전문의</u>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14. “개별제어반(DCU : Door Control Unit)”이라 함은 <u>가동문</u> 마다 상부에 설치하여 종합제어반(RF장치 포함)과 제어신호를 송·수신하고 고장 및 점검 시 <u>가동문</u> 을 개·폐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14. “개별제어반(DCU : Door Control Unit)”이라 함은 <u>승강장안전문</u> 마다 상부에 설치하여 종합제어반(RF장치 포함)과 제어신호를 송·수신하고 고장 및 점검 시 <u>승강장안전문</u> 을 개·폐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15. “지상 RF장치”라 함은 승강장에 설치되어 전동차 차상 RF장치와 통신하여 종합제어반 또는 개별제어반과 인터페이스 하는 장치를 말한다.	15. (현행과 같음)	
16. “차상 RF장치”라 함은 전동차 전·후부 운전실에 설치하여 지상 RF 장치와 통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현행과 같음)	
17. “정위치정차 감지장치”라 함은 전동차가 승강장에 진입 시 정위치 정차 위치에 대한 거리인식 및 정위치 정차여부를 감지하는 설비를 말한다.	17. (현행과 같음)	
18. “기관사안내장치(HMI : Human Machine Interface)”라 함은 기관사에게 열차의 정위치정차 상태 및 설비의 동작상태와 이상유무 등을 표시하는 장치를 말한다.	18.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비고
19. “가동문”이라 함은 열차 출입문과 연동하여 동작하며, 승객이 열차를 승·하차하기 위한 출입문을 말한다.	19. “ <u>승강장안전문</u> ”이라 함은 열차 출입문과 연동하여 동작하며, 승객이 열차를 승·하차하기 위한 출입문을 말한다.	<p>※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22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 변경</p>
20. “비상문”이라 함은 전동차 1량당 2조(4쪽)씩 설치되어 <u>비상문</u> 중앙의 가로막대(페닉바)를 밀어서 열리는 출입문을 말한다.	20. “ <u>안전보호벽(비상문)</u> ”(이하 “비상문”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동차 1량당 2조(4쪽)씩 설치되어 비상문 중앙의 가로막대(페닉바)를 밀어서 열리는 출입문을 말한다.	
21. “선로출입문”이라 함은 승강장 전·후부에 설치하여 비상 시 또는 유지보수 시 선로측으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을 말한다.	21. “ <u>안전보호벽(선로출입문)</u> ”(이하 “선로출입문”이라 한다)이라 함은 승강장 전·후부에 설치하여 비상 시 또는 유지보수 시 선로측으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을 말한다.	
22. “기관사출입문”이라 함은 기관사가 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출입문을 말한다.	22. “ <u>안전보호벽(기관사출입문)</u> ”(이하 “기관사출입문”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관사가 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출입문을 말한다.	
23. “유지보수전산기”라 함은 기술사업소에 설치되어 관할 구간의 설비상태 조회·감시 및 장애·운용기록 관련 통계 보고서 등의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	23. (현행과 같음)	
24. “승강장안전문 중앙전산기”란 메인서버와 스토리지 서버로 구성되며, 통상 <u>승강장안전문 서버</u> 라고 말한다.	24. “ <u>승강장안전문설비</u> 중앙전산기”란 메인서버와 스토리지 서버로 구성되며, 통상 <u>승강장안전문설비</u> 서버라고 말한다.	
25. “승강장안전문 중앙관제시스템 유지관리 담당자”란 승강장안전문 설비의 감시와 필요시 원격제어 및 중앙관제시스템의 운용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5. “ <u>승강장안전문설비</u> 중앙관제시스템 유지관리 담당자”란 <u>승강장안전문설비</u> 의 감시와 필요시 원격제어 및 중앙관제시스템의 운용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6. “메인서버”란 각 역사와의 통신·알람·시간 동기화·파일서버·웹서버·데이터베이스 서버 역할을 하며, 감시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장비를 말한다.	26. (현행과 같음)	
27. “스토리지 서버”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저장소 역할을 하는 장비를 말한다.	27. (현행과 같음)	
28. “승강장안전문 워크스테이션”이란 승강장안전문 중앙감시시스템·유지관리시스템·엔지니어링시스템·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28. “ <u>승강장안전문설비</u> 워크스테이션”이란 <u>승강장안전문설비</u> 중앙감시시스템·유지관리시스템·엔지니어링시스템·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29. “감시시스템”이란 각 역사의 승강장안전문 상태정보·알람·통신상태 등을 표시하며 운용기록 조회 및 승강장안전문에 대한 열림/닫힘/바이패스 등의 일부 제어 기능을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9. “감시시스템”이란 각 역사의 <u>승강장안전문설비</u> 상태정보·알람·통신상태 등을 표시하며 운용기록 조회 및 <u>승강장안전문설비</u> 에 대한 열림/닫힘/바이패스 등의 일부 제어 기능을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0. “유지관리시스템”이란 각 역사 종합제어반의 파라미터 및 응용프로그램 업데이트 기능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각 종 보고서를 조회 및 출력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	30. (현행과 같음)	
31. “엔지니어링시스템”이란 각 역사의 승강장안전문 관련 파라미터와 펌웨어를 생성하여 관리하고 백업 드라이버를 제어하여 데이터를 저장매체에 백업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	31. “엔지니어링시스템”이란 각 역사의 <u>승강장안전문설비</u> 관련 파라미터와 펌웨어를 생성하여 관리하고 백업 드라이버를 제어하여 데이터를 저장매체에 백업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	

현행	개정	비고
32. “네트워크 관리시스템(NMS : Network Management System)”이란 승강장안전전문 중앙감시장치 네트워크 상태를 보여주고 이벤트를 저장하여 데이터량을 모니터링 하여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를 말한다.	32. “네트워크 관리시스템(NMS : Network Management System)”이란 승강장안전전문설비 중앙감시장치 네트워크 상태를 보여주고 이벤트를 저장하여 데이터량을 모니터링 하여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22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 변경
33. “장애물감지센서”라 함은 구조체 측면에 설치되어 사람이나 물건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말한다.	33. (현행과 같음)	
34. “역사 승강장안전전문 감시시스템”이라 함은 각 역사 i 센터에 설치되어, 승강장안전전문 상태정보·통신상태 등을 표시하며 승강장안전전문 여단음 상태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34. “역사 승강장안전전문설비 감시시스템”이라 함은 각 역사 i 센터에 설치되어, 승강장안전전문설비 상태정보·통신상태 등을 표시하며 승강장안전전문설비 여단음 상태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5년 5월 직제 규정 개정 관련, 본 부장방침 제 395호
35. “구동부”라 함은 개별제어반으로부터 동력 및 제어신호를 수신하여 설비의 가동 을 개·폐시키는 구동장치를 말한다.	35. “구동부”라 함은 개별제어반으로부터 동력 및 제어신호를 수신하여 설비의 승강장안전전문 을 개·폐시키는 구동장치를 말한다.	
36. “유니트(Unit)”이라 함은 설비의 기본 단위로서 동일 형상이며 제작·설치에 필요한 모든 부속설비(구동부·개별제어반·가이드레일·강화유리·연접기구·지지철물·마감재 등)를 포함한다.	36.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22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 변경
37. “ 승강장안전전문 구조체”라 함은 H·빔·새시·도어부·구동박스·도어턱(가이드레일)·더미부 등으로 구성된다.	37. “ 승강장안전전문설비 구조체”라 함은 H·빔·새시·도어부·구동박스·도어턱(가이드레일)·더미부 등으로 구성된다.	
38. “전원장치”라 함은 승강장안전전문 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축전지·정류기 또는 무정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된 설비를 말한다.	38. “전원장치”라 함은 승강장안전전문설비 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축전지·정류기 또는 무정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된 설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22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 변경
제4조(유지보수자의 의무) 기술사업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승강장안전전문 설비 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유지보수자의 의무) 기술사업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승강장안전전문설비 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승강장안전전문 운용 및 유지관리의 업무 한계) 승강장안전전문 의 운용과 유지관리에 따른 관련 부서의 업무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승강장안전전문설비 의 운용 및 유지관리의 업무 한계) 승강장안전전문설비 의 운용과 유지관리에 따른 관련 부서의 업무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22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 변경
1. 승강장안전전문 의 관제시스템은 종합관제센터장이 운용 및 유지관리 한다.	1. 승강장안전전문설비 의 관제시스템은 종합관제센터장이 운용 및 유지관리 한다.	
2. 승강장안전전문 의 시험장비는 기술연구소장(전자개발 P/L)이 운용관리 한다.(개정 2014.9.17)	2. 승강장안전전문설비 의 시험장비는 기술지원단장(통신전자 부장) 이 운용관리 한다.(개정 2014.9.1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22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 변경
3. 소장이 현장에서 조치가 불가능하여 입고한 PCB 류, 기타 부속장치 등의 정비는 기술연구소장(전자개발 P/L) 이 운용관리 한다.(개정 2014.9.17)	3. 소장이 현장에서 조치가 불가능하여 입고한 PCB 류, 기타 부속장치 등의 정비는 기술지원단장(통신전자 부장) 이 운용관리 한다.(개정 2014.9.17)	
4. 전동차 내 차상 RF장치는 차량정비처장이 유지관리 한다.(개정 2014.9.17.)	4. 전동차 내 차상 RF장치는 차량정비처장이 유지관리 한다.(개정 2014.9.17.)	

현행	개정	비고
제2장 승강장안전전문 운용관리	제2장 승강장안전전문설비 운용관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22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 변경
제7조(비상시 출입문 운용) 역장은 화재 등 비상시 또는 승강장안전전문 전원장치 고장 등으로 가동 문이 자동으로 개·폐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제어반 또는 승강장조작반에서 비상모드를 설정하고 모든 출입문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7조(비상시 출입문 운용) 역장은 화재 등 비상시 또는 승강장안전전문설비 전원장치 고장 등으로 승강장안전전문 이 자동으로 개·폐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제어반 또는 승강장조작반에서 비상모드를 설정하고 모든 출입문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8조(승강장안전전문 운전자) ① 승강장안전전문 운용자는 승강장안전전문 을 운용함에 있어서 설비의 훼손·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 등으로 인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이 있거나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종합관제센터장 및 관련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승강장안전전문설비 운전자) ① 승강장안전전문설비 운용자는 승강장안전전문설비 를 운용함에 있어서 설비의 훼손·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 등으로 인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이 있거나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종합관제센터장 및 관련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22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 변경
② 역장은 『관제업무운영규정』에서 정한 규정(열차 운행 및 영업준비 상태 보고) 관련하여 승강장안전전문설비 이상 시 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역장은 『관제업무운영규정』에서 정한 규정(열차 운행 및 영업준비 상태 보고) 관련하여 승강장안전전문설비 이상 시 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바이패스 설정 조건) 승강장에 열차가 진입하기 전과 출발 시 바이패스 설정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바이패스 설정 조건) 승강장에 열차가 진입하기 전과 출발 시 바이패스 설정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22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 변경
1. 승강장안전전문 장애(전원, 개별제어반, 가동 문 잠금장치 등) 발생	1. 승강장안전전문설비 장애(전원, 개별제어반, 승강장안전전문 잠금장치 등) 발생	
2. 승강장안전전문 가동 문이 안닫힌 경우	2. 승강장안전전문 이 안닫힌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22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 변경
3. 기타 긴급 점검이 필요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제11조(바이패스 설정 방법) ① 승강장에 열차가 진입하기 전 승강장안전전문 장애와 관련하여 속도코드가 정지신호(01신호)일 경우에 기관사는 종합관제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종합관제센터장은 역장에게 바이패스 설정을 취급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11조(바이패스 설정 방법) ① 승강장에 열차가 진입하기 전 승강장안전전문설비 장애와 관련하여 속도코드가 정지신호(01신호)일 경우에 기관사는 종합관제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종합관제센터장은 역장에게 바이패스 설정을 취급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22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 변경
② 승강장에서 열차 출발 시 승강장안전전문 장애와 관련하여 속도코드가 무신호(02신호)일 경우에 기관사는 종합관제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종합관제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바이패스 설정 취급으로 출발하여야 한다.	② 승강장에서 열차 출발 시 승강장안전전문설비 장애와 관련하여 속도코드가 무신호(02신호)일 경우에 기관사는 종합관제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종합관제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바이패스 설정 취급으로 출발하여야 한다.	
③ 종합제어반 및 승강장조작반에서 바이패스를 설정한 후, 정상 기능이 회복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바이패스 설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비고
<p>제3장 승강장안전전문 유지관리</p> <p>제13조(점검의 종류) 승강장안전전문 운용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일상점검”은 승강장안전전문 운용상태의 이상 유무를 순회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p> <p>2. “정기점검”은 승강장안전전문 기능을 일정 주기별로 주요부분의 상태 및 기능을 확인하는 점검을 말한다.</p> <p>3. “임시점검”은 승강장안전전문 신설·개조 등을 하였을 경우와 기능에 이상이 발생될 경우 승강장안전전문 일부 또는 기능 전반에 대하여 시행하는 점검을 말한다.</p> <p>4. “특별점검”은 승강장안전전문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나 고장의 우려가 있다고 예측될 때, 또는 관련 부서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p> <p>제17조(보수작업 계획수립) ① 소장은 승강장안전전문을 관리함에 있어서 점검결과 및 시설의 상태에 따라 보수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소장은 필요 시 보수작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p> <p>제19조(유지관리 이행계획 수립) ① 시스템을 관장하는 각 소장은 다음 연도의 점검·보수·교체 및 개량이 필요한 사항을 계획 수립하고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15.8.13)</p> <p>② 센터장은 기술사업소 및 자체 계획을 검토 후, 승강장안전전문 유지관리 이행계획을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15.8.13)</p> <p>제20조(유지관리의 기록) 소장은 각종 점검의 결과 및 시스템에 이상이 있을 때의 조치 등에 관하여 시설물유지보수시스템(UTIMS)의 점검 및 검사표에 필요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p> <p>②검사 및 점검표는 내규로 정한다. 단, UTIMS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수기 작성한다.</p> <p>③ 승강장안전전문시설물 이력 및 유지보수 부품의 관리하는 공사의 시설물유지보수시스템(UTIMS) 및 SMRT - UFFICE 시스템 운영절차에 따라 관리한다.(신설 2014.12.26)</p>	<p>제3장 승강장안전전문설비 유지관리</p> <p>제13조(점검의 종류) 승강장안전전문설비의 운용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일상점검”은 승강장안전전문설비 운용상태의 이상 유무를 순회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p> <p>2. “정기점검”은 승강장안전전문설비의 기능을 일정 주기별로 주요부분의 상태 및 기능을 확인하는 점검을 말한다.</p> <p>3. “임시점검”은 승강장안전전문설비 신설·개조 등을 하였을 경우와 기능에 이상이 발생될 경우 승강장안전전문설비의 일부 또는 기능 전반에 대하여 시행하는 점검을 말한다.</p> <p>4. “특별점검”은 승강장안전전문설비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나 고장의 우려가 있다고 예측될 때, 또는 관련 부서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p> <p>제17조(보수작업 계획수립) ① 소장은 승강장안전전문설비를 관리함에 있어서 점검결과 및 시설의 상태에 따라 보수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9조(유지관리 이행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센터장은 기술사업소 및 자체 계획을 검토 후, 승강장안전전문설비 유지관리 이행계획을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15.8.13)</p> <p>제20조(유지관리의 기록)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승강장안전전문설비 시설물 이력 및 유지보수 부품의 관리하는 공사의 시설물유지보수시스템(UTIMS) 및 SMRT - UFFICE 시스템 운영절차에 따라 관리한다.(신설 2014.12.26)</p>	<p>※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22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 변경</p>

현행	개정	비고
<p>제4장 승강장안전전문 고장 및 보고</p> <p>제22조(장애복구시 준수사항) ① 승강장안전전문 보수자는 장애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승강장안전전문 해당 설비 운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때 가동문은 개방상태로 유지하여 승·하차에 지장이 없도록 응급조치하여야 하며, 해당역에 승강장 안전요원 지원요청 후 신속히 종합관제센터장 및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장은 관련 부서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장애의 상황에 따라 응급복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른 장애를 유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p> <p>③ 소장은 장애복구 작업 종료 시 각 설비의 동작상태를 시험하여 정상적인 동작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④ 소장은 장애복구 작업 시작과 종료사항에 대하여 종합관제센터장과 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장 승강장안전전문설비 고장 및 보고</p> <p>제22조(장애복구시 준수사항) ① 승강장안전전문설비 보수자는 장애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승강장안전전문설비 운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때 승강장안전전문은 개방상태로 유지하여 승·하차에 지장이 없도록 응급조치하여야 하며, 해당역에 승강장 안전요원 지원요청 후 신속히 종합관제센터장 및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22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 변경</p>